

# 안 내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분쟁조정 제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프로그램의 조정위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신속·저렴할 뿐만 아니라 사업상·개인적 비밀이 절대 보호되는 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길 바란다.

### 법적근거

컴퓨터프로그램심의 조정위원회는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 8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접수된 프로그램저작권 분쟁에 대하여 조정하여 진다.

### 조정부 구성

본 위원회 내에 제1조정부·제2조정부가 있으며, 각 조정부는 현직 변호사 1인이 포함된 3인의 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 되어 있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관련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관인 (재)한국컴퓨터 프로그램보호회를 설립, '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청절차, 분쟁조정절차등 이 제도를 소개토록한다. (편집자주)

## 조정신청

- 프로그래머저작권 관련 분쟁 당사자 등은 해당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쌍방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조정비용(별표 참조)을 납부해야 한다.  
① 당사자의 주소·성명 ② 신청의 취지 ③ 신청 원인

## 조정진행

- 담당조정부는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출석하여 쌍방의 진술(구두나 서면으로)을 듣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합의가 성립되도록 해준다.
- 조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거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조정효력

- 조정이 성립되고 나서 쌍방이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다만,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거나 조정신청이 접수된지 3개월이 경과되면 조정은 불성립 된다.

## 조정의 이점

조정의 이점

- 프로그래머저작권 관련 분쟁은 소송에 비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바람직하다. 즉, 조정이 원만히 되었을 경우 장기간(1~2년)이 걸릴 분쟁 해결이 단기간(3개월내)에 가능하다.

- 조정에 의한 해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상 또는 개인적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
- 각 조정부는 법조계, 학계 그리고 프로그램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법률지식이 없더라도 전문적이며 공정하고 타당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신청 절차가 간편하다.

## 조정 신청·문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11층) (135-708)「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 전화 : (02)3452-2722~4  
팩스 : (02)3452-2725

〈 분쟁조정 절차 흐름도 〉

